

#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4. . .

제 출 자 : 안전행정부

## 제안이유

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방자치 선진화에 필요한 권한을 추가 이양하고, 관광·교육·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,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 및 차별화된 정책 시행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·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, 현행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며,

지난 2006년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정 이후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권한이양으로 방대하고 복잡해진 법률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## 추가·변경된 주요내용

가.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JDC)의 임원 결격사유 정비(안 제

**176조)**

민법개정으로 금치산·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임원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

**나. 제주곶자왈 보전 근거 마련(안 제354조)**

제주지역의 중요 환경자산인 곶자왈이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곶자왈 보호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특별법에 곶자왈 보전 의무 부여

**다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권한조정(안 제398조)**

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및 인정취소, 지도·감독 등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

**라.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승인권한 등 이양(안 제400조)**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상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 연장, 재입국 취업허가,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

**마.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조정(안 제402조)**

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있던 「고용보험법」상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

조정

**바.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위한 조사권한 등 이양(안 제403조)**

도지사로 이양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행사하기 위한 위반사항 조사 및 조사거부 방해에 대한 제재수단 이양

**사. 당초 입법예고한 법개정안 보완**

사립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규정 삭제(안 제131조), 감사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(안 제137조),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 법정화(안 제138조), 단기체류외국인 임시운전 요건으로 교통안전교육 추가(안 제203조), 자치경찰 통행금지·제한 시 국가경찰 사전협의 등(안 제434조),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 의제 규정(안 제467조) 등

법률 제 호

##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
제131조제1항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81조, 「사립학교법」 제48조·제70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81조”로 한다.

제137조제1항 중 “감사위원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”을 “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138조제1항 중 “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”로 한다.

제176조제1호 중 “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”으로 한다.

제203조제1항 중 “외국인에 대하여”를 “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”으로 한다.

제206조 중 “제70조제1항”을 “제78조의2제7항”으로 한다.

제267조제1항 중 “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”을 “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·어촌 발전계획”으로 한다.

제321조 중 “보건복지부령”을 “총리령”으로 한다.

제3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4조 (꽃자왈 보전 의무)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피지대로 숲과 덩굴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(이하 “꽃자왈”이라 한다)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꽃자왈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보전·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재산의 보전·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354조부터 제480조까지를 각각 제355조부터 제481조까지로 하고, 제398조제1항(중전의 제397조제1항) 중 “제24조제2항·제3항”을 삭제하고, “제58조제1항·제2항·제3항·제4항”을 “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(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)”로 한다.

제400조제1항(중전의 제399조제1항) 중 “제18조의2제1항, 제18조의4제1항”을 삽입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399조제2항) 중 “제12조제3항”을 “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”로 한다.

제402조제3항(중전의 제401조제3항) 중 “제27조”를 삭제하고, “제29조 (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”을 “제29조 (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”으로 한다.

제403조제1항(중전의 제402조제1항) 중 “제15조의3”을 삽입하고, “에 따른”을 “및 제26조의2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34조제6항(중전의 제433조제6항) 중 “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 이외에 도지사”를 “도지사”로, “필요한 경우에는”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·경비와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67조(중전의 제466조) 중 “「형법」”을 “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「형법」”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

만,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18조의 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



| 전부개정안<br>(입법예고)  | 수정안<br>(재입법예고)  |
|--|---|
| <p>등에 관한 특례) ①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<u>외국인</u>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외국인은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.</p> <p>1.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상이 아닌 사람</p> <p>2.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</p> <p>②~④ (생략)</p>              | <p>등에 관한 특례) ① -----<br/>-----<br/>-- <u>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는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</p> <p>1. -----<br/>-----</p> <p>2. -----<br/>-----</p> <p>②~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 |
| <p>제206조(외국방송의 재송신)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「방송법」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 | <p>제206조(외국방송의 재송신)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제78조의2제7항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 |
| <p>제267조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) ① 도지사는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(이하 "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전계획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4조제5항에 따른 <u>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</u>으로 본다.</p> <p>②~⑥ (생략)</p> | <p>제267조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 <u>농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·어촌 발전계획</u>-----<br/>②~⑥ (개정안과 같음)</p> |
| <p>제321조(식품위생에 대한 특례) 「식품위</p>   | <p>제321조(식품위생에 대한 특례) -----</p>   |







| 전부개정안<br>(입법예고)  | 수 정 안<br>(제입법예고)  |
|--|---|
| <p>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(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한정한다)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 | <p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  |
| <p>제402조(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) ①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제1항 및 제17조(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)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  | <p>제403조(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) ① ----- 제15조의3,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및 제26조의2에 따른 -----<br/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 |
| <p>제433조(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) ①~⑤ (생략)</p> <p>⑥ 「도로교통법」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·경찰서장 이외에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(區間)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| <p>제434조(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) ①~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⑥ ----- 도지사-----<br/>-----<br/>-----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-----<br/>- 다만,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호·경비와 그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지사에 우선하여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<br/>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|
| <p>제466조(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) 지 원위원회 위원,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</p>  | <p>제467조(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) --<br/>-----<br/>-----</p>  |
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전부개정안</b><br/>(입법예고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수 정 안</b><br/>(재입법예고)</p>  |
|--|--|
| <p>원은 「형법」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--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「형법」<br/>-----</p> 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.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6조 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|
| <p>제2조(유효기간) 제18조의 규정은 20 년 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2조(유효기간) 제18조의 규정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  |
| <p>&lt;신 설&gt;</p>   | <p>제7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1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